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142
------------	-------

발의연월일 : 2017. 12. 29.
발 의 자 : 신동근 · 박경미 · 전재수
윤관석 · 안민석 · 김병욱
김민기 · 조승래 · 소병훈
오영훈 · 노웅래 · 유은혜
의원(12인)

제안이유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부상·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하고, 국·공립 교직원과의 노후소득 보장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법」의 급여부분 및 재해보상제도를 준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공무원의 경우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법」에서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을 통하여 재해보상 수준의 현실화 외에도 직무상 유족연금 등에 대하여 최고·최저 보상기준 마련 및 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등의 급여를 신설하여 급여의 종류를 확대하고자 하고, 그 외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 새로 도입된 분할연금제도를 일부 개선·보완하기 위한 분할연금 선청구(先請求)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한바, 이에 사립학교

교직원들도 동일한 적용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무상 유족연금 등에 대한 최고·최저 보상기준 설정(안 제35조)

직무상 유족연금 및 교직원 본인이 사망하는 경우 지급하는 사망조
위금의 산정기초인 교직원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50퍼센트 미만이면
그 금액을 각각 해당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으로 하도록 함.

나. 직무상 보상 종류의 확대 적용(안 제42조)

직무상으로 다쳐 요양 중인 교직원이 재활운동이 필요하거나 심리
적 치료를 위하여 심리상담을 한 경우 재활운동비 및 심리상담비를
지급도록 함.

다. 실질적인 혼인기간에 대한 분할연금 인정(안 제42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중 5년 이상의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별거 또는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아닌 기간은 제외
하도록 함.

라. 분할연금 선청구제도 및 퇴직연금일시금 등 분할제도의 도입(안
제42조)

1) 퇴직연금 수급연령이 되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
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먼저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분할
연금 선청구 제도를 둠.

2) 분할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대신 퇴직연금일시금이나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17호)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안」(의안번호 제68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19조 제4항제4호 및 제33조 중 “장애”를 “장애”로 한다.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6조에 따른 직무상 유족연금 및 제43조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금액을 각각 해당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33조에 따른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49조까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부터 제65조까지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 중 해당 규정(위험

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 한다)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교직원(「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2조제1항의 재난부조금 산정과 같은 법 제43조제3항의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사망에 따른 사망조위금 산정,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의 지급정지 대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으로, “공무상”은 “직무상”으로, “비공무상”은 “비직무상”으로, “순직공무원”은 “직무상사망교직원”으로, “순직”은 “직무상”으로, “공단” 및 “인사혁신처장”은 각각 “공단”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으로, “사립학교교직원”은 “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 제34조제1항의 “제25조”를 이 법 “제31조”로, 「공무원연금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제43조제3항의 “제26조”를 이 법 “제32조”로, 「공무원연금법」 제52조제5항의 “제31조 및 제32조”를 이 법 “제36조 및 제37조”로, “기여금”은 “개인부담금”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2항(직무상유족연금의 급여액을 산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6조제2항 및 제37조제2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액 산정의 기초에 관한 적용례) ① 제35조제2항 중 최저 보상기준 금액에 관한 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전에 사망하여 직무상유족연금의 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종전의 「공무원연금법」(법률 제 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직무상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액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급여 지급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무상유족연금의 지급액에 관한 적용례) ①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6조제2항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직무상유족연금의 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직무상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액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급여 지급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에 따른 급여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4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분할연금 지급 및 선청구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개정

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이혼한 사람이 이 법 시행 후 분할연금의 지급 및 선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분할연금액 지급 대상 혼인기간에는 2016년 1월 1일 전에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교직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을 포함한다.

②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45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의 요건에 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연도별로 정한 연령에 도달한 경우에는 제4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1.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0세
2. 2022년부터 2023년까지: 61세
3. 2024년부터 2026년까지: 62세
4. 2027년부터 2029년까지: 63세
5. 2030년부터 2032년까지: 64세

③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49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이혼한 사람이 이 법 시행 후 퇴직연금일시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퇴직일시금의 분할 지급 및 선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분할대상 혼인기간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교직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을 포함한다.

제6조(혼인기간의 정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①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혼인기간은 2016년 12월 29일 이후 최초로 이혼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4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29일 이후 최초로 이혼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7조(분할연금액의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분할연금을 청구(선청구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제4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2.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분할연금 선청구를 하는 경우

제8조(급여 제한사유 소멸에 따른 급여 및 이자 지급에 관한 특례)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6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제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5년이 지나면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6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제9조(재활급여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6조 및 제27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35조에 따라 공무상 요양 결정을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액은 이 법 시행 후 재활운동을 하거나 심리 상담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부상· <u>장애</u> 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u>장애</u> - ----- ----- ----- ----- --.
제2조(정의) ① (생 략) ② 제1항제2호의 유족 중 자녀는 19세 미만인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u>장애</u> 상태에 있는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유족 중 손자녀는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u>장애</u> 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 (생 략) 2.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u>장</u>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장애</u> - ----- ----- ----- ----- ③ ----- ----- ----- ----- ----- ----- ----- - <u>장애</u> - ----- ----- ----- 1. (현행과 같음) 2. ----- -----

<p><u>애</u> 상태에 있는 사람</p> <p>제19조(공단의 권한 등) ① ~ ③ (생 략)</p> <p>④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1. ~ 3. (생 략)</p> <p>4. 교직원의 직무상 질병·부상 및 <u>장애</u>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범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대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자료</p> <p>제33조(급여) 교직원의 직무로 인한 질병·부상 및 재해에 대하여는 단기급여를 지급하고, 교직원의 퇴직·<u>장애</u> 및 사망에 대하여는 장기급여를 지급한다.</p> <p>제35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① (생 략)</p> <p>1. · 2. (생 략)</p> <p><u><신 설></u></p>	<p><u>장해</u>-----</p> <p>제19조(공단의 권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p> <p>-----</p> <p>-----</p> <p>-----</p> <p>-----</p> <p>-----</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4. -----</p> <p>- <u>장애</u>-----</p> <p>---: -----</p> <p>-----</p> <p>----</p> <p>제33조(급여) -----</p> <p>-----</p> <p>-----</p> <p>----- <u>장애</u>-----</p> <p>-----</p> <p>제35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① (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u>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2조</u></p> <p><u>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u></p>
--	---

원 재해보상법 제36조에 따른 직무상 유족연금 및 제43조 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금액을 각각 해당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③ ·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42조(「공무원연금법」의 준용) 제42조(「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 ① 제33조에 따른 단기급여 및 장기급여에 관한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34조, 제35조, 제36조의2, 제37조부터 제41조 까지, 제41조의2, 제42조 및 제43조, 제43조의 2, 제44조 및 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1조부터 제61조까지, 제61조의2 및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중 해당 규정(순직유족연금 및 순직유족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각각 준용한다. 이

② · ③ (생략)

제42조(「공무원연금법」의 준용) ① 제33조에 따른 단기급여 및 장기급여에 관한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34조, 제35조, 제36조의2, 제37조부터 제41조 까지, 제41조의2, 제42조 및 제43조, 제43조의 2, 제44조 및 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1조부터 제61조까지, 제61조의2 및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중 해당 규정(순직유족연금 및 순직유족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교직원(「공무원연금법」 제41조제1항의 재해부조금 산정과 같은 법 제41조의2제3항의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사망에 따른 사망조위금 산정, 같은 법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의 지급정지 대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으로, “공무상”은 “직무상”으로, “공무상요양비”는 “직무상요양비”로, “공단” 및 “인사혁신처장”은 각각 “공단”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으로, “사립학교교직원”은 “공무원”으로, “제23조”는 이 법 “제31조”로, “제24조”는 “제32조”로, “제28조 및 제29조”는 “제36조 및 제37조”로, “기여금”은 “개인부담금”으로 본다.

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교직원(「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2조제1항의 재난부조금 산정과 같은 법 제43조제3항의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사망에 따른 사망조위금 산정,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의 지급정지 대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으로, “공무상”은 “직무상”으로, “비공무상”은 “비직무상”으로, “순직공무원”은 “직무상사망교직원”으로, “순직”은 “직무상”으로, “공단” 및 “인사혁신처장”은 각각 “공단”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으로, “사립학교교직원”은 “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 제34조제1항의 “제25조”를 이 법 “제31조”로, “공무원연금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제43조제3항의 “제26조”를 이 법 “제32조”로, “공무원연금법” 제52조제5항의

<p>② ~ ⑤ (생략)</p>	<p><u>“제31조 및 제32조”를 이 법</u> <u>“제36조 및 제37조”로, “기여</u> <u>금”은 “개인부담금”으로 본다.</u> ② ~ ⑤ (현행과 같음)</p>
-------------------	---